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5. 6. 13.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43호로 2025년 5월 30일 전승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책임, 사업주체(안 제2조 ~ 제4조)

나. 이용의 대상,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 6. 3.~2025. 6. 1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보건복지부 「2025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다만,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 또한, ‘돌봄 특례’를 적용하여 일반아동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함.
 -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도 현재 일반아동과 돌봄아동 모두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가능한 바, 현행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현행 조문은 본 조례의 골자인 ‘아동 지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넘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아동지역센터 목적(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적합한 구청장의 책무로 개정함.
- **안 제4조(사업주체)**는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신고 요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인용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음.
- **안 제5조(이용의 대상)**는 영등포구 아동지역센터 운영 현황 및 보건복지부 「2025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기준에 따라,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 또한, 동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우선돌봄아동 대상을 열거함.
 - 한편, 2025년 5월 말 기준,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총 현원 536명 중 우선돌봄아동 412명(77%)로 파악됨.

□ 검토결과

- 상기 개정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중심의 차별적 이용 인식 해소 및 현행 운영 실태를 제도적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